

국가스포츠정책위를 향한 사회학적 시선: 제도, 이해, 아이디어의 관점에서

탁민혁

Loughborough University

m.tak@lboro.ac.uk

배경과 시선

현대 (스포츠) 거버넌스 환경에서 보다 일관되고 효과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'조정'의 필요성 증대

-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도 그런 시도의 일환일 것

시선

- 1차적, 전통적 시선: 합리성에 기반한 순환적 과정 + 다른 이해관계 간의 충돌/조정으로 이해
- 2차적, 현실적 시선: 해결책은 문제와 함께(심지어 문제 이전에) 준비(예. '교육' = 만능열쇠 for 모든 스포츠 윤리문제) + 담론정치를 포함한 역동적 과정
- 3차적, 대안적 시선: 사회협약(social pact)의 제도장치로서?

관점: 3Is – institutions, interests, ideas

정책형성/변화를 설명하는 개별 변수인 동시에 상호 작용 – 패키지화된 분석틀 구성 가능

상대적 영향력

일정한 제도맥락(예. 국가스포츠정책위의 구성과 운영, 특기자제도)에서 개별 'I'의 역할을 찾아내고,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추적으로써 표면 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+ 예측에 유용

제도

국가스포츠정책위 = 제도; 국가스포츠정책위 < 제도 (국가스포츠정책위 또한 더 광범한 제도맥락에 위치)

- 제도는 상대적으로 지속되는 규칙과 조직화된 관행의 집합 (March and Olsen, 2008)
- 제도는 '게임의 규칙' (North, 199)
- 제도는 규제적, 규범적, 문화-인지적 요인들로 구성 (Scott, 2008)

두 개의 초점

- 국가스포츠정책위가 만드는 현상 – 정책위의 규정력 범위 (예. 스포츠진흥 기본계획)
- 국가스포츠정책위를 통해 드러나는 현상 – 예. 정치쟁점화 (KOC, '카르텔', 공익감사청구안, 국가스포츠위원회 추진 등)
 - 국가스포츠정책위 또한 더 광범한 제도맥락에 의해 제약(예.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간의 기존 관계)

게임의 규칙

- 해당 제도의 규칙, 절차, 관행 (+그 안에 배태된 이해와 아이디어) 등이 어떻게 스포츠정책 행위 및 현상을 방향짓는가?
- 권한과 기능: 실질적 vs. 상징적
- 두 얼굴: 질서(안정) + 규제(통제)

제도

어떤 **이해**를 더 대변 또는 배척 하는가

- 누가 참여하는가? 어떤 그룹을 대변하는가? 어떤 세력이 추천했는가?

특정 **아이디어**를 확산

- 어떤 문제는 정치적 의제로 조직되고 다른 문제들은 소거됨 (Schattschneider, 1961)

개인행위자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, 그것은 제도가 규정하는 맥락 안에 한정됨 (그게 제도 본연의 존재 이유)

국가스포츠정책위를 제도로 본다는 것은:

- 1) 어떤 이해/관점이 명시적으로 추구되느냐
- 2) 어떤 이해/관점이 당연하게 정당화되는가

Illiberal liberalism의 위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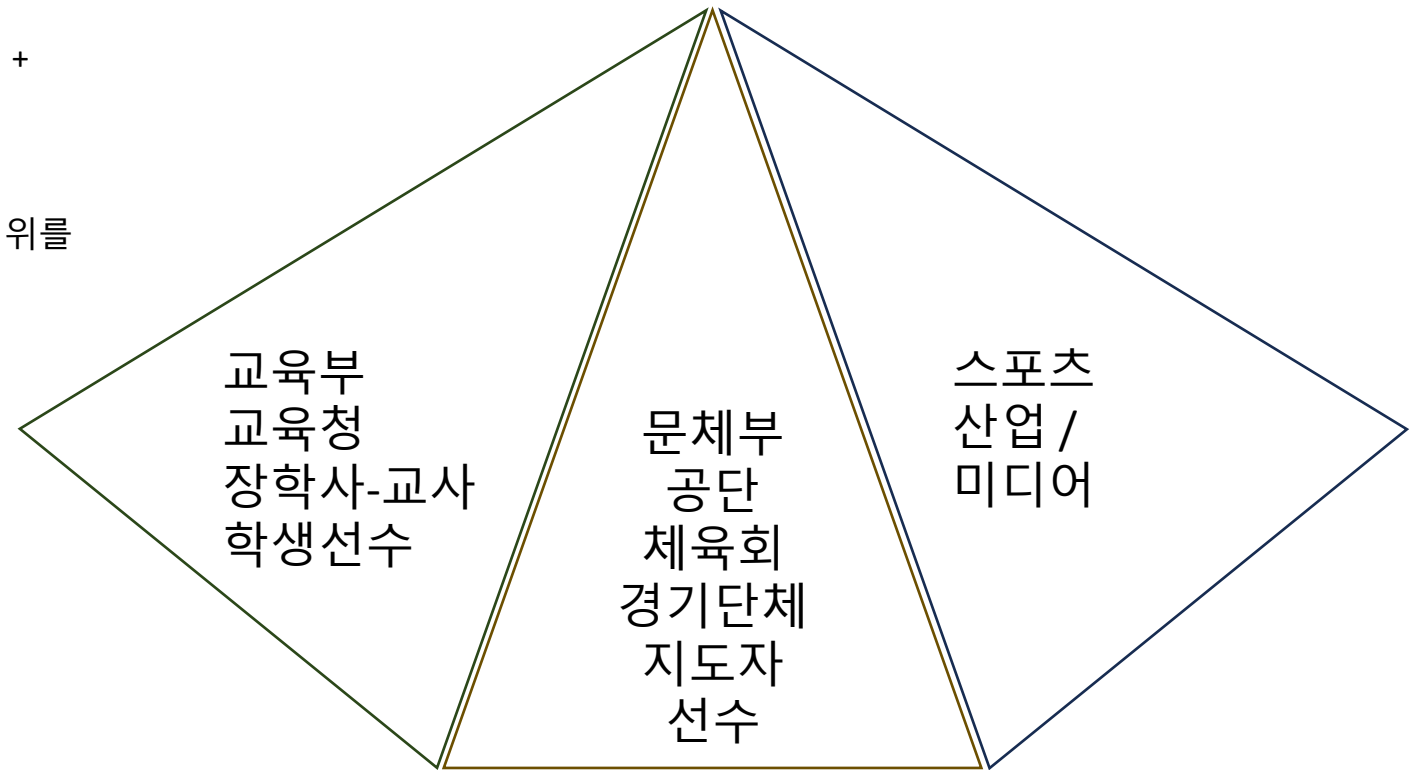
이해

다원주의에서 중시

- 합리성, 자원, 권력; 경쟁, 거래, 교섭의 원리; 물질 이해 + 상징 이해 (capital)

국가스포츠정책위가 현시하는 이해들 vs. 국가스포츠정책위를 통해 드러나는 이해들

- 정부 (부처): 문체부, 교육부
- 정부 agencies: 공단, 체육회, 윤리센터 등 (개별 인물)
- 경기단체
- 연구자/전문가
- 캠페인 그룹
- 미디어
- 지도자/교사
- 선수/학생
- 그 밖의 서비스 공급자



이해

비정부/준정부행위자, 상업행위자의 영향력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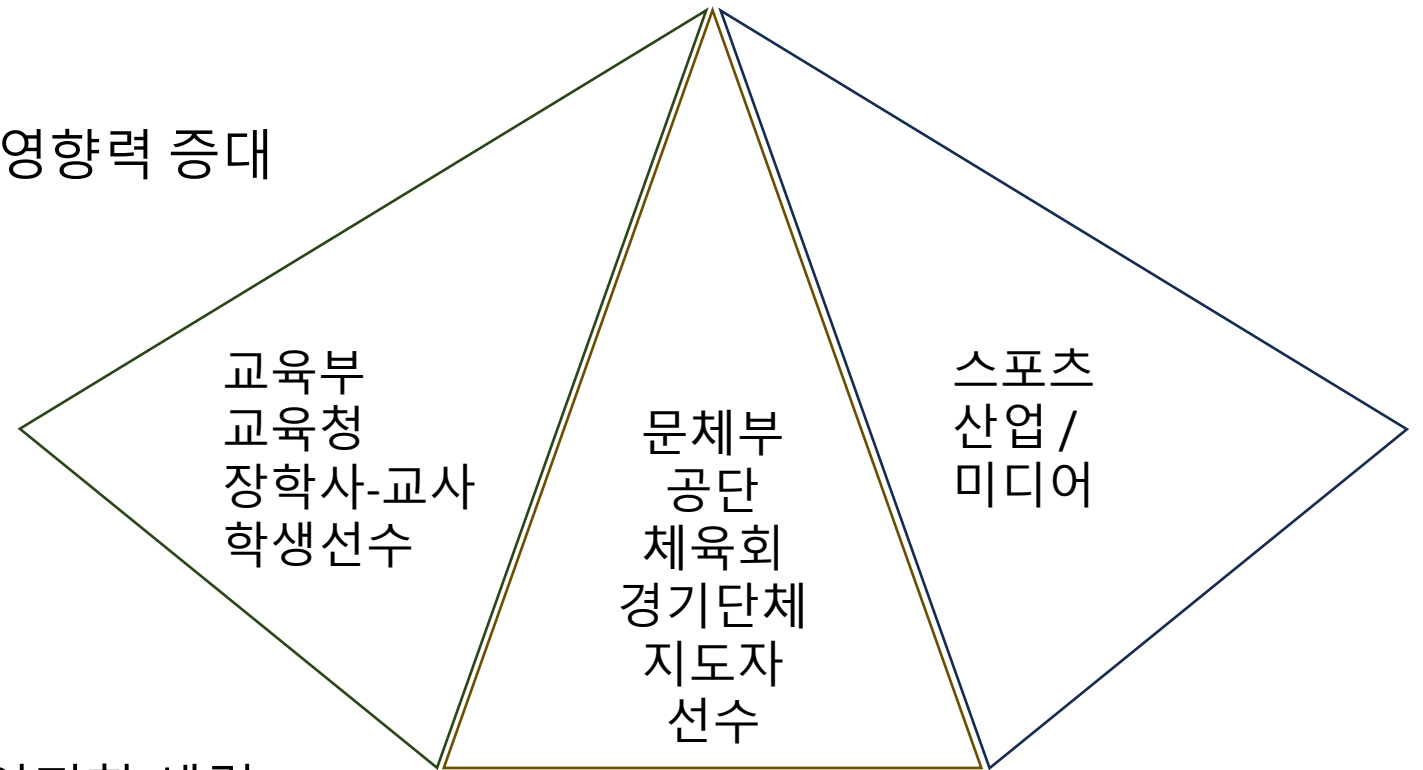
- 체육회, 시민단체, 미디어

누가 더/덜 힘있는 집단?

누가 더/덜 대변되는 집단?

체육인?

경기인 vs. 체육교육인 (vs. 산업/미디어지향 세력)



아이디어

다양한 형태

- 이해를 정당화하는 논리, 서사(협소한 '이해' 중심적 관점)
- 정책행위자들의 상황인식 – 문제/아젠다(비)정의, 증거취급, 해결책 고안 등
- 이해당사자들의 가치관, 신념, 규범체계 (고정관념, myths 포함)
- 이데올로기, 패러다임, 조직운영원리 등
- 섹터윤리: 공존 vs. 몰살

정치/정책활동의 상당부분은 'best story'를 구성하는 것(Fischer, 2003)

제도는 “단순히 누가 뭘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침” (Hally & Taylor, 1996)

아이디어

국가스포츠정책위가 현시하(고자 하)는 아이디어? 효율성, 투명성, 책임성, 대표성, 일관성, 전문성, 신뢰성, 위임사무의 조율, 등?

국가스포츠정책위를 통해 드러나는 아이디어

- 행위자들은 의사결정 테이블에 ‘아이디어’를 내장하고 참여(인격화된 아이디어 + 인격화된 이해)
 - 발언, 주장의 줄거리는 가치, 신념, 문제의식 등을 반영 (담론분석의 대상)
 - 전문가 참여의 증대 – 이들의 주장이 증거에 기반한 것인지; 이해,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인지
 - 전문성의 개념
- 참여자들은 그들의 소속과 정체성을 통해 특정 아이디어를 대표 (예. 전문성, 체육인)
- 안건과 논쟁은 특정 아이디어를 선호하거나 당연하게 가정

사회학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영역

- 표현 하에 있는 상식으로 포장된 아이디어 포착
- 문제정의와 해결책의 정당화 분석 – 그 이면의 권력관계와, 그 결과로서 이해 배분 구명

대안적 시선: '사회협약의 장치'로서 국가수준위원회

‘사회협약의 공간’으로서 국가 수준 스포츠 관련 위원회

- 준정부기관(non-majoritarian institutions): 위임된 사무 + 상대적 계속성과 전문성(service bargain) – 선거 아이러니

한국사회에서 스포츠가 확보한 일정한 자율성은 사회협약(social pact)에 기반; 묵시적 협약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 것(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모르는 것 뿐)

- 스포츠에 지원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신 지켜야 하는 조건과 역할의 타협(일종의 Public service bargain)

지금까지의 묵시적 사회계약은 ‘메달’을 통한 국위향상

- 사회협약을 갱신한 바가 있는가, 앞으로의 사회계약이 이것으로 가능한가 – 새로운 사회(예. 저출산의 시대) 스포츠의 역할
- 새로운 약속 패키지를 통한 재협약

국가스포츠위원회(대한체육회 안)?

대안적 시선: '사회협약의 장치'로서 국가수준위원회

새로운 사회협약을 위한 제도, 이해, 아이디어

- 제도: 국가스포츠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 지원, 점검, 갱신의 공간(다양한 위임조직들 국가가 기획하는 방향에 맞게 종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, 그 종사에 요구되는 것들을 요청하는 자리)
- 이해: 협약의 협상을 위해 날카롭게 버려진 이해 필요 (이해관계와 정당화 아이디어의 지형도 필요)
- 아이디어: 각축하는 이해를 통합할 수 있는 아이디어(아젠다) 필요 – 정치적

스포츠사회학 연구의 역할